

GH 제6기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한 건설엔지니어링/민간사업자 공모 심사·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관계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6.08.27.(목) ~ '26.9.30.(수)

□ 모집분야 및 인원 : 18개 분야 약 000인 내외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상하수도, 도로, 교통, 도시계획, 조경, 전기, 정보통신, 기계, 환경에너지, 건설안전및재난, 재무, 사업운영관리 (*세부 전문분야는 분류표 참고)

□ 위촉기간 : '27. 1. 1.~ '28. 12. 31.까지

□ 지원방법 : GH 기술평가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속주소 : <https://evaluation.gh.or.kr:8443/>

(구글 검색 :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상단 '평가위원' - '모집공고'

- 제출서류 : ① 평가위원 정보등록(홈페이지)

② 증빙서류 : ㉠ 재직, ㉡ 학력, ㉢ 자격증, ㉣ 경력, ㉤ 타 위원회 위촉장(필요시)

*재직증명서는 본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지원서 작성요령 필독

*필수 작성사항 및 증빙서류 누락시 후보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원 자격요건 사항

- 소속기관 : 행정기관(공무원), 공공기관, 대학(교수) 재직자

- 주 근무지 :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충청권 전역(세종·대전·충북·충남), 강원권 일부(춘천·홍천·횡성·원주)

- 세부자격요건 : 【붙임1】 참조 *5기 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타 안내사항

- 특정 전문분야의 지원자가 과소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위원선정을 하지 않거나 타 전문분야와 통합하여 선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 명단은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며,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중 전과정을 녹화 및 중계하고 있음
- 위원회의 임기 동안 위원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소속 및 주 근무지 등)
- 위촉된 위원의 퇴직, 소속기관 변경 등의 신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우리 공사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 자격 요건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촉사유에 해당됨.
- 관련 정부정책 및 내부 규정에 의거 여성 및 청년 위원 후보자 우대함
- 특별한 사유 없이 GH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이 불가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개최하며, 참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수당을 지급함

□ 최종 선정대상 : '26년 12월 GH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등 개별안내

□ 문의사항 :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기술처 기술심사부

☎ 031-220-3512~3514, 3506, 3205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기준

1. 행정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회계사·감정평가사 및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2급 이상, 기술사·건축사·회계사·감정평가사 및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 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2급 이상, 기술사·건축사·회계사·감정평가사 및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직원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해당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6.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수
7.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0. 해당분야에서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公社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붙임 2】전문분야 분류표 (참고용)

전문분야 분류표

전문분야	세부 전문분야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환경 등
건축시공	시공기술, 시공재료, 시공관리, 품질관리 등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건축기초구조, 내진건축, 구조해석 등
토목시공	토목시공, 공사관리, 품질관리 등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구조, 구조해석, 합성구조 등
토질및기초	지반, 사면, 터널, 옹벽, 토류구조물, 기초 등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공업용수계획, 하수처리, 수질처리, 정수처리, 폐수처리 등
도로	도로계획, 도로설계, 도로포장, 도로안전 등
교통	교통계획, 교통경제, 교통안전, ITS, 등
도시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재생
조경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등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력설비, 전기안전, 전기소방 등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IoT 등
기계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기설비, 공기조화설비, 방재설비 등
환경에너지	대기,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안전및재난	안전진단, 방재, 지진, 소방, 건축안전, 토목안전, 스마트안전 등
재무	사업비 및 분양가 산정, 사업성 검토, 자원조달 및 자금운용, 사업비 정산, 부동산금융 등
사업운영관리	분양·공급, 브랜드 마케팅, 입주·고객관리, 시설·하자관리, 커뮤니티 운영 등